

무배당 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사업방법서

2006. 4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 인 서

무배당 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을 개발함에 있어서 협정서, 사업방법서, 약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부담금 및 적립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06 년 4 월 일

하 나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

선임계리사 윤 기 수 (인)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2. 사업경영의 지역

이 보험의 약관에 규정한 단체에 소속하고, 장래 그 단체가 설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이하 “퇴직급여제도”라 한다)로부터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3. 단체 및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가. 단체

이 보험에서 “단체”는 법 제13조에 의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나.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

이 보험에서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는 동일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속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집단으로 한다.

4. 보험종목의 세목

가. 주계약

- 금리연동형
-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3년)
- 실적배당형(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혼합형)

나. 부가하는 특약 : 무배당 하나자산관리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

5. 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보험세목별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구분		공시이율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1년	1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이율보증기간 3년	3년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나.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산출방식이 변경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1)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계산

회사는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2:1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공시기준이율(%)

$$= \frac{\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2 + \text{지표금리} \times 1}{3}$$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영업수지차」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운용자산이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6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times (12 / 6) \times 100}{(\text{직전7개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6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운용자산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한다.

(주)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의 산출기간은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 \text{지표금리}(\%) = (A1 + A2 + A3) / 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3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2)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계산

회사는 지표금리를 공시기준이율로 하며,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 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단,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공시기준이율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1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A1 + A2 + A3) / 3

-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3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3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 공시기준이율(%) = (A1 + A2 + A3) / 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3 :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가중이동평균이율

$$= \frac{Mi(-3) + Mi(-2) \times 2 + Mi(-1) \times 3}{6}$$

Mi(-3) : 산출시점 전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전 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Mi(-2) : 산출시점 전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전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Mi(-1) : 산출시점 당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직전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 3. 정기예금이율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은 제외한다) 중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 기준 상위 5개 은행의 15일자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산술평균한 이율로 한다. 단, 전년도 원화예수금(말잔)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은행을 정한다.
- 4.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15일자 정기예금이율,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3) 제'가'항의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가 산출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별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은 해당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나)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해당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 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4)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변경전 계약에도 변경시부터 적용한다.

다. 제'나'항 (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판매월후 7차월까지는 아래와 같이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며,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단, 공시이율최저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적용한다.

(주) $k(\leq 7)$: 판매(펀드개설월)후 공시이율 적용 차월수, $j = \max(k-2, 0)$

(1) 공시기준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times j$ + 지표금리 $\times 3$) / (j + 3)

단, 최초 판매월(펀드개설월)의 공시기준이율은 지표금리만 사용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제'나'항과 같이 산출한다.

○ 운용자산이익률(%)

$$\frac{(2 \times \text{직전 } j\text{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times (12 / j) \times 100}{\text{펀드개설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 } j\text{개월간 투자영업수지차}}$$

※ .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운용자산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한다.

(주)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의 산출기간은 공시기준이율의 산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k가 1 또는 2인 경우 운용자산이익률은 "0"을 적용함)

라. 회사는 년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한다.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한다.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을 따른다.

6. 부담금

가. 기본부담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산정 또는 결정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한다.

나. 추가부담금

기본부담금 이외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규약에 의해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한다.

다. 일시전환부담금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또는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7. 보험기간 및 부담금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

나. 납입기간

전기납

다. 수금방법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8. 급여의 종류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9.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추가가입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이후 새로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단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한 자중에서 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추가 가입시킬 수 있다.

나.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에 추가 가입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추가 가입일은 제'가'항에 의해 계약자가 보험대상단체(피보험단체)에 추가가입시킨 날로 한다.

10. 해약환급금의 지급

이 보험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해약환급금은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중도해지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으로 한다. 단, 이윤보증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윤

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1. 청약서 등의 서식

- 가.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 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서식은 별첨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12.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13.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보험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가. 무주택자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14.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운용관리기관의 중도인출 통지에 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 가. 무주택자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15.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선정

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을 선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 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 금리연동형
-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3년) : 이율보증기간별로 선정 운용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 채권형

- 혼합형
- 인덱스혼합형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경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자산관리수수료, 상품관리수수료,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자산관리수수료, 상품관리수수료,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자산관리수수료, 상품관리수수료,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적용한다.

다.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한함)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한함)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부담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① 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② 해약환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③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④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①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 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 는 금리연동형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6.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펀드의 유형

(1)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① 채권형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에 펀드순자산(NAV)의 90% 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단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함.

② 혼합형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 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함.

③ 인덱스혼합형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 이하로 투자하고, 국내 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 및 채권형 수익증권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합니다. 단 주식관련 파생상품과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 이하에서 운영함.

(2) 제(1)호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에서 “채권”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다음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국채증권
- ② 지방채증권
- ③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④ 사채권
- ⑤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 ⑥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에탁증서
- ⑦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제(1)호에서 투자적격 채권에의 투자라 함은 신용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권 (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는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함.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 적용)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5) 제(1)호에서 “주식”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①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 ②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③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 ④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 ⑤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6) 제(1)호에서 “채권관련파생상품”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CD금리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등 보험업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의 평가액은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주식관련파생상품”에의 투자라 함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주가지수옵션 등 보험업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의 평가액은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 (7) 제(1)호에서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①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 또는 단기대출(콜론에 한함)
 - ②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기타 채무증서의 매입
 - ③ 투자일로부터 만기가 6개월 이내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매입
 - ④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입
 - ⑤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방법
- (8) 제(3)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투자가능 대상은 보험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가'항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호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다.
- (4)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호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바'항 제(1)호 제①목 내지 제③목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5)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6)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의 자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된다.
- (2)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된다.
-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좌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 단위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 (2) 좌당 기준가격
펀드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상품관리수수료, 특별계정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마.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 할 수 있다.
- (2) 제(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목에 의한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 ③ 제①목 및 제②목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① 당해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당해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③ 제①목 및 제②목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사. 투자한도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2)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3)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신탁보수,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 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다.

17. 적립금의 계산

이 보험의 적립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8.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보험세목 선택 및 변경

- 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4. 보험종목의 세목」에서 정한 보험세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19. 중도해지수수료의 보험세목에의 편입

협정서에서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는 당해 보험세목 특별계정의 수익으로 편입한다.

20. 이율보증형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보험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 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부담금 납입시 「5. 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보증기간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공시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설정된 각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보험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나'항을 준용한다.
- 라.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로 한다.
- 마. 제'나'항 및 제'다'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보험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나이가 연금규약에서 정한 정년퇴직에 의한 급여지급이 발생하는 나이(이하 "정년나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제'라'항에 의한 단위보험 자동설정시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의 나이가 정년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율보증기간이 가장 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한다.

바. 이율보증기간중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시장가격조정률(MVA; 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MVA = 1 - \left(\frac{1}{1 + \frac{i_j}{i_p}} \right)^{\epsilon \cdot n}$$

(1) MVA의 최댓값은 5%로 함

(2) $i_j > i_h$ 인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으로 함.

주) ① 잔여보증기간 : 단위보험 해지일부터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말일까지 기간

-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 ϵ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일단위기간

- n : 365 또는 366

② i_j : j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

③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 $i_h = i_{h-1} + (i_{h+1} - i_{h-1}) \times m' / (12 \times n)$ (소수점 4째자리에서 반올림)

-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공시이율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 단, 잔여보증기간이 공시되는 이율보증기간 중 최단기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 i_{h+1} " 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한다.

-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공시이율별 보증기간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

- n'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i_{h+1} 이율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 기간

- m' : i_{h-1} 이율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 기간(월미만 절상)

사. 제'마'항의 경우 단위보험 만기일에 정년나이까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기간이 없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은 금리연동형으로 보험세목을 변경하여 적용한다.

21. 기타 사항

가. 용어의 사용

이 보험에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 방법서로 한다.

나. 이 보험의 내용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